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시설 범위) ①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”란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- 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의 시설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5조에 따른 교지 외에 교육·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

제3조(감독기관) 법 제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- 1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1호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1호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: 중앙행정기관(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)
- 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·제3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·제3

호에 따른 학교 : 시·도교육청

- 3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: 시·도교육청
- 4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: 중앙행정기관
- 5. 법 제2조제1호바목·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시설 : 개별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 등의 지도·감독 기관

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

제4조(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)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(이하 “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,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,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)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

라 한다)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1월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기준·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, 변경된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)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실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고, 이를 지체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·시행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기준·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, 변경된 실행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3 -

④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실행결과를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계획·실행계획의 확인·점검 등)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결과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·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제6조제4항에 따라 실행계획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리 확인·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확인·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를 요구한 교육부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, 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0년(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)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
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
- 4 -

1. 기획재정부
 2. 교육부
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4. 행정안전부
 5. 환경부
 6. 고용노동부
 7. 국토교통부
 8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
-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.
1. 「교육기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
 2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
 3. 「고등교육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협의체
 4. 그 밖에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또는 전문기관
- 제9조(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운영)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,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,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

- 5 -

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위원장은 회의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정책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 또는 이해관계인(이하 이 항에서 “당사자”라 한다)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

- 6 -

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(授受)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(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 내용 등)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(이하 “최소환경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, 사회적·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
1. 교육·연구 및 실습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환기·채광·조명 등의 설비시설 기준
2.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냉난방 설치 및 운영·관리 기준
3.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면적이 확보되고, 다양한 학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등의 건축 기준

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신축·증축·개축·이전 등의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·점검 내용·절차 등) 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이 법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소관 교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·증축·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도 평가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·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·점검 대상,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, 평가·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평가·점검 결과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·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 평가·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5조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내용 및 점검 절차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정책위원회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(이하 “안전·유지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을 말한다.
-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,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별로 구분하여 안전·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한 점검 항목별로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,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점검 결과,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9 -

-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·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·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⑥ 교육시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16조(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)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시설의 장을 말한다.
1. 법 제2조제1호가목·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: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
 2.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수련원,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 :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
 3. 제1호·제2호 외의 교육시설 :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폐교·이전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(이하 “안전인증”이라 한다)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17조(교육시설안전인증 기준 및 등급·유효기간) ① 안전인증 기준은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,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별로 구분하여 마련할 수 있으며, 교육부장관이 정하

여 고시한다.

② 안전인증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정한다.

③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 여부 및 등급·유효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단위로 실시하되, 제16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시설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등의 단위로 안전인증 여부 등을 결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축, 증축 등 건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

2.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

⑤ 교육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안전인증에 관

- 11 -

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.

⑦ 인증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정 기준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교육시설안전인증 취소)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 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점검 결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20조(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작성)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(이하 "안전점검등지침"이라 한다)을 작성하고,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(이하 "안전점검등"이라 한다)에 필요한 설계도면, 시방서,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

2. 안전점검등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

- 12 -

3.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4.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
5.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
6.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
7.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8.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·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1조(안전점검등의 실시) ① 안전점검등의 실시시기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3을 준용하여, 해당 교육시설의 준공연도,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등급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축,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교육시설로서, 사용되지 않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점검등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.

1. 해당 교육시설을 설계·시공·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(이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인 안전진단전문기관
2. 해당 학교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

안전진단전문기관. 다만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⑤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.

제22조(안전점검등의 결과보고)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,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출한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해 부실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 등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결과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.

제23조(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점검등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
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2. 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·진단의 우려가
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
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
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
 2.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·보강 방법의 적정성
 3.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항
-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
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,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
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
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.
- 제24조(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)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
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
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
하고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수·보강 등의 조치 계획을 수립
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·보강 등의 조치 계획에 따라 결함

- 15 -

에 대한 보수·보강, 개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
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
하여야 한다.

- ③ 결함에 대한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
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내용을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
정보망에 입력하고,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결함에 대한 보수·보강
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
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
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.
- 제25조(안전성평가 대상)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”란 「건축법」 제11조에
따른 건축허가 또는 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 제5조의2에 따른 건축승인
대상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를 말한다. 다만
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
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감독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성
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“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
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
하는 경우로서,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
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를 말한다.

- 16 -

제26조(안전성평가 절차 등)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건축법」 제11조·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또는 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 제5조의2에 따른 건축승인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(이하 “안전성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11조·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려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내용·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구조 및 지반의 안전성, 통학로 안전 확보의 적정성 등 안전성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계획서, 기본설계도서 등의 사업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안전펜스 설치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보완조치 계획서 및 조치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

- 17 -

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7조(안전성평가 결과 안전 확보 요청)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·허가권자에게 공사의 중지·제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·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·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

제28조(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관 지정) 교육부장관은 「통계법」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29조(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·운영)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·점검 결과

- 18 -

2.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
 3.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
 4.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
-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정보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자료의 입력기준, 확인절차 및 정보공개 등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30조(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절차 등)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의 내용, 응급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시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,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고의 원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1. 사고의 개요
 2. 사고원인의 분석
 3.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

- 19 -

4.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·분석한 사항
-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다.

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

- 제31조(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)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1. 시설물 안전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에 관한 사항
 2. 교육시설의 구조안전, 화재안전 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3. 교육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·점검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

- 제32조(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정 취소)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·점검에 관한 업무
 2.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
 3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업무

- 20 -

4.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
5.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업무

②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전문기관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지정된 업무와 관련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의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3.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

제33조(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조직,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2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
- 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
 - 가. 전담조직·예산·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춘 것
 - 나.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

2.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

- 가.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
- 나.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춘 것
- 다.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를 보유할 것

3. 그 밖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: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

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(전문기관이 자진 철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·단체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, 반기별 운영실적을 상반기의 경우 7월 31일까지,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⑦ 전문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⑧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으며,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4조(전문기관의 지도·감독)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35조(안전원의 지도·감독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이라 한다)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안전원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의 일시,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려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안전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간까지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36조(업무의 위탁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
2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
3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4.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업무
5. 법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

- 23 -

6.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

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·점검에 관한 업무
2.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
3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업무
4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 업무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·기준·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7조(교육식별정보의 처리) 교육부장관(법 제4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무
2.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무
3.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
4.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

- 24 -

제38조(과태료의 부과)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의3을 삭제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
1. 위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(公衆)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금액		
		1차	2차	3차이상

		위반	위반	위반
가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	법 제54조제1항	1,000	1,500	2,000
1)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·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			
2)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				
3)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	1,000	1,500	2,000	
나.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·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54조제2항제1호	500	750	1,000
다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	법 제54조제2항제2호		500	750
1)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		
2)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				
3)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	1,000			
라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54조제2항제3호	500	750	1,000
마.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	법 제54조제3항제1호		250	350
1)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		
2)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				
3)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	500			
바.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	법 제54조제3항제2호		500	
사.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	법 제54조제3항제3호			

으로 보고한 자				
1)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		
2)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				
3)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				
4)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250	350	500	
아.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	법 제54조제3항제4호	250	350	500
자.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용한 자	법 제54조제3항제5호		500	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·점검 대상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”이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시설안전인증 등급·유효기간)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심사분야”란 별표와 같다.

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(이하 “안전인증”이라 한다)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.

③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안전인증을 확정할 날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안전인증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등)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인증기관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,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인증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인증 여부 및 제3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등급·유효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안전인증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인증 평가에 참여한 자는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(재인증 대상)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”이란 건축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.

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”란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.

제6조(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) 영 제20조제9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육안감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,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
2. 결함부위의 확정방법에 관한 사항

3.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
4.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5. 시설물 하중내하력(荷重耐力)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6.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
7.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등제에 관한 사항

제7조(보존기간)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
1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
2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

제8조(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) ①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24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
 2.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
 3. 누수·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
 4.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
- ③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- 31 -

④ 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개축 등 조치방식, 재정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안전성평가 절차 등) ① 영 제26조제4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학교·학생 안전 확보 방안
2. 학교·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
3.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

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③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자 참여 절차 등)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·설계과정에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, 학교의 교수·학습 활동에 필요한 적정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를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, 관계 공무원 및 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·운영 등을 통하여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.

- 32 -

③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립된 교육시설에 대해 사용자 만족도, 효과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사용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전문기관의 지정 절차)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
2. 전문기관의 운영계획
3.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
4. 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
5.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

③ 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) 영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안전인증 심사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인증 분야	주요 내용
시설안전	구조, 전기, 기계, 가스, 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내재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평가
실내환경안전	교육시설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, 안전환경 조성, 건축재료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
외부환경안전	교육시설 주변 보행자 교통 안전, 감시·보안 체계 등 외부 환경 등에 대해 평가

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

*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
신청인	기관명	고유등록번호	
	주 소	대표자 성명	
	실 무 담당자	부서	직위
	Tel	Fax	E-mail
신청대상 건축물	건축물명	착공(예정)일	
	소재지	준공(예정)일	
	연면적	용도	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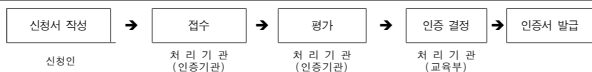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신청서 접수기관 (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자체 평가서 2.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신청한 금액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**안전조치 명령서**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이 소유·관리·점유하고 있는 시설·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
 - 가. 시설명·지역명
 - 나. 점검등의 개요
 - 다. 점검등의 결과
2.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
3. 안전조치 이행기한
4. 안전조치 이행사항 및 방법
5.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(안전조치 결과 보고서 첨부)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관자 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	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	
협조자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
전화번호()	팩스번호()	/ 기관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			

- 37 -

안전조치 결과 보고서

안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	성명(대표자)	
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
안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·지역명 또는 위치		
안전조치 이행 주요내용		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: (서명 또는 인)

기관의 장 귀하

구비서류	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사진 등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	

- 38 -

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

보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	성명(대표자)	
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
보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·지역명 또는 위치		
보완조치 이행 주요내용		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: (서명 또는 인)

기관의 장 귀하

구비서류	보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사진 등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전문기관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신청기관	기관명		
	대표자 성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소재지		
	전화번호		
	설립 근거		
	설립 목적		
	설립 연월일		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(또는 대리인) (전화번호:)

교육부장관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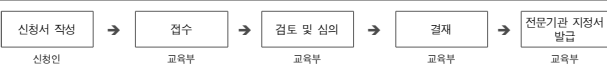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.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.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4. 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5.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	수수료 없음
교육부장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) 또는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교육부장관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전문기관 지정서

기관명

대표자 성명

법인등록번호
(사업자등록번호)

소재지

전화번호

설립 근거

설립 목적

설립 연월일

유효기간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_____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

과태료처분 통지서

제 호

과태료 납부대상자 인적사항	업체[기관] 명	
	법인[고유] 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:)
	성명(대표자)	
위반사항		
관련근거		
과태료 금액		

- 귀하께서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0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
년 월 일까지 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 및 별표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, 과태료 금액이 산정되며,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○○기관의 장

첨부서류 |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, 끝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과태료납입고지서

납입고지서	
제 호	년도 일반회계
납 주 소	
부 성 명	
세입과 목	(관) 임시적세외수입 (항) 잡수입 (목) 과태료
위반사 항	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00조
금 액	금 원정
납부기한	년 월 일
납부장소	
위의 금액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
수 입 일부인	년 월 일 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관 장

90mm×160mm
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영수필통지서(1)	
제 호	년도 일반회계
납 주 소	
부 성 명	
세입과 목	(관) 임시적세외수입 (항) 잡수입 (목) 과태료
위반사 항	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00조
금 액	금 원정
납부기한	년 월 일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	
수 입 일부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관 장 징수관 귀하

90mm×160mm
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영수필통지서(2)	
제 호	년도 일반회계
납 주 소	
부 성 명	
세입과 목	(관) 임시적세외수입 (항) 잡수입 (목) 과태료
위반사 항	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00조
금 액	금 원정
납부기한	년 월 일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	
수 입 일부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관 장

90mm×160mm
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영 수 증	
제 호	년도 일반회계
납 주 소	
부 성 명	
세입과 목	(관) 임시적세외수입 (항) 잡수입 (목) 과태료
위반사 항	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00조
금 액	금 원정
납부기한	년 월 일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 년 월 일	
수 입 일부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관 장

90mm×160mm
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360mm×160mm
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